
학사조직 신설 절차

1. 학과 명칭 변경 절차

가. 교육과정 변경이 없는 경우

- 단위부서 학사운영위원회 → 학칙 개정 요청 → 교무회의 논의사항 → 학칙 개정

나. 교육과정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

- 단위부서 학사운영위원회 → 기획처에 학칙 개정 요청 / 교무처에 교육과정 변경 요청 →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변경 교육과정 확정 → 교무회의 논의사항 → 학칙 개정

2. 학사조직 신설 절차

가. 학부 내 학과(전공) 신설 절차

- ① 「학부(학과,전공) 신설계획서」 (별첨1) 작성 및 제출 :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학과(전공) 신설계획서는 기획처로, 교육과정 신설신청서는 교무처로 제출
- ②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개최 : 제출된 신설계획서를 바탕으로 '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' 개최하여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 확정
- ③ 교무회의 안건 상정 : 기획처에서는 최종 확정된 신설계획서를 교무회의에 '논의사항' 으로 상정함
- ④ 「아주대학교 학칙」 개정 : 확정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학칙 개정

나. 일반대학원 내 학과 신설 절차

- ① 「대학원 학과(전공) 신설계획서」 (별첨2) 작성 및 제출 :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기획처 및 대학원으로 제출
- ② 대학원위원회 개최 : 제출된 신설계획서를 바탕으로 '대학원위원회' 를 개최하여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 확정
- ③ 교무회의 안건 상정 : 기획처에서는 확정된 신설계획서를 검토,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교무회의에 '논의사항' 으로 상정함
- ④ 「아주대학교 학칙」 개정 : 확정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학칙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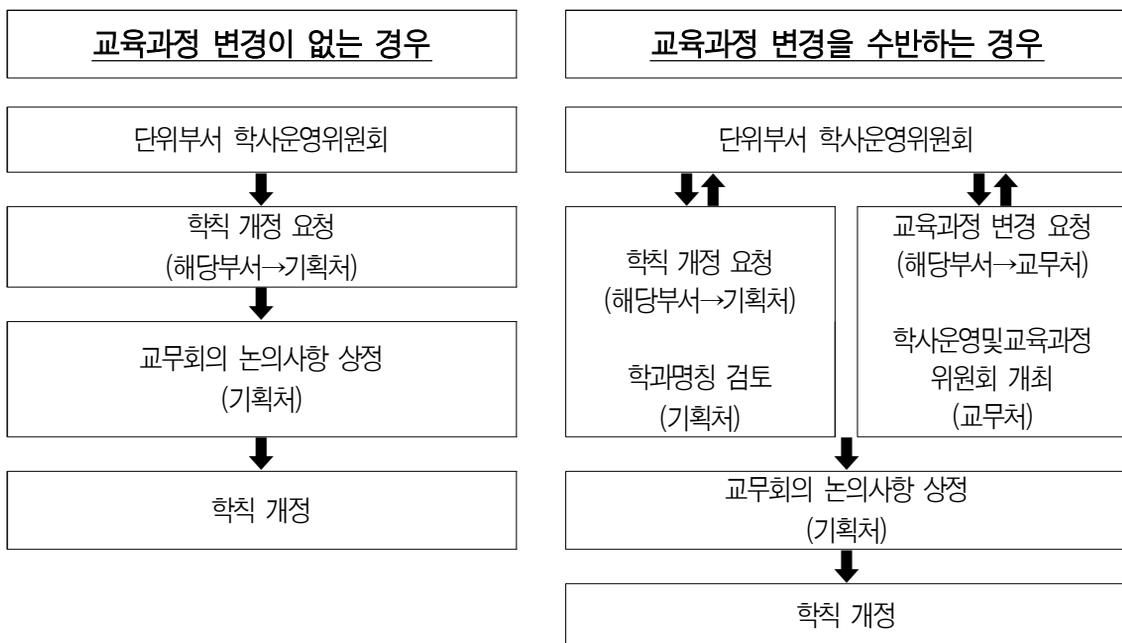
다. 특수대학원 신설 절차

- ① 「대학원 신설계획서」(별첨2) 작성 및 제출 : 해당 특수대학원에서 작성하여 기획처로 제출
- ② 특수대학원위원회 개최 : 제출된 신설계획서를 바탕으로 '특수대학원위원회' 를 개최하여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 확정
- ③ 교무회의 안건 상정 : 기획처에서는 확정된 신설계획서를 검토,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교무회의에 '논의사항' 으로 상정함
- ④ 「아주대학교 직제규정」 개정 : 직제규정에 신설 특수대학원 반영
- ⑤ 「아주대학교 학칙」 개정 : 특수대학원 신설 사항 학칙 반영

라. 특수대학원 내 학과 신설 절차

- ① 「대학원 신설계획서」(별첨2) 작성 및 제출 : 해당 특수대학원에서 작성하여 기획처로 제출
- ② 특수대학원위원회 개최 : 제출된 신설계획서를 바탕으로 '특수대학원위원회' 를 개최하여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 확정
- ③ 교무회의 안건 상정 : 기획처에서는 확정된 신설계획서를 검토,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교무회의에 '논의사항' 으로 상정함
- ④ 「아주대학교 학칙」 개정 : 확정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학칙 개정

< 학과 명칭 변경 절차도 >



〈학사조직 신설 절차도〉

